

보도시점 : 2023.11.15.(수) 11:00 이후(11.16.(목) 조간) / 배포 : 2023.11.15.(수)

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...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

- 20일부터 3개월간 2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
- 1차 신고기간 접수사례 및 불법 대폐차 사례 718건 엄중 조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20일(월)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*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.

* 1차('23.2.20.~'23.3.17., 4주) 대비 3배 연장한 3개월('23.11.20.~'24.2.20.) 운영

○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「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」(2.6.)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

○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*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.

* 물류신고센터 누리집(nlic.go.kr/nlic/logis112action), 이메일(logis112@koila.or.kr)

□ 국토교통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, 경찰청으로 조사·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.

○ 이중 운송사가 변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.

□ 이와 함께, 국토교통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* 신고업무를 점검(9.4.~9.22.)하였다.

* 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용 중인 기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변경

○ 점검 결과, 영업권 매매(소위 '변호판 장사')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으며,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 취소·감차처분 등을 요청하였다.

○ 또한,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“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면서,
- “또한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 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,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	이경수	(044-201-4016)
		담당자	사무관	박병관	(044-201-4017)
			사무관	김정현	(044-201-4025)
			주무관	김상조	(044-201-4022)



참고 1

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개요

□ (운영기간) '23.11.20.(월) ~ '24.2.20.(수), 3개월

* 1차 지입제 피해 신고기간은 4주간('23.2.20~'23.3.17) 운영

□ (신고방법) 물류신고센터 누리집(nlic.go.kr/nlic/logis112.action) 또는 이메일(logis112@koila.or.kr) 신고*

* (누리집) 신고자가 본인인증 후 신고양식에 따라 누리집에 직접 신고내용 입력
(이메일) 신고자가 신고양식에 따라 피해사례 작성 후 메일 송부

□ (신고주체) 관련 피해 경험에 있는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였던 자

□ (신고내용) 부당금전 수취, 현물출자자 미기재 등 지입제 피해사례

유형	주요 내용
① 번호판 사용료 요구 또는 수취	- 위·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
② 대폐차 도장값 요구 또는 수취	- 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
③ 명의이전 대가 요구 또는 수취	- 특례허가, 임시허가 등을 위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금전(계약서 미기재)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
④ 사업권 양도·양수 비용 전가	- 사업의 양도·양수에 소요되는 비용(번호판 값 등)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
⑤ "현물출자자" 미기재	- 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를 "현물출자자"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
⑥ 장기 운송계약 제한	- 지입차주가 다른 운송사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
⑦ 고의로 보험·공제에 미가입	-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·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
⑧ 위·수탁계약서 미교부	- 서명날인한 위·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
⑨ 위·수탁계약기간 미기재 또는 2년 미만으로 설정	- 위·수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
⑩ 기타 운송사의 부당행위	-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,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등 각종 부당행위

□ (조치방안)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지자체 행정처분, 국세청 탈세 의혹 세무조사, 경찰청 수사 등 요구

○ 필요시, 우리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추진

참고

1차 지입제 피해 신고접수 및 대폐차 업무점검 결과

1차 지입제 피해 신고접수 결과

사례 1 지입제 피해신고 사례에 대해 처분 조치

- (신고내용) ○○통운이 차주로부터 계약서에 없는 번호판 보증금 2,300만원 수취
- (조사내용) ①차주로부터 ○○통운에 입금한 내역 확보
②계약서 내용 확인을 위해 ○○통운으로부터 위·수탁계약서 확보
- (조치사항) 지자체에 ○○통운 사업정지 요청, 국세청에 ○○통운 탈세의혹 세무조사 요청

사례 2 처벌을 우려한 운송사가 금전을 돌려준 경우

- (신고내용) ○○로지스가 차주로부터 명의변경을 이유로 1천만원 수취
- (신고결과) ○○로지스는 차주가 접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 등 처벌을 우려하여, 차주에게 1천만원을 돌려줌 ⇨ 차주는 금전을 돌려받아 신고 취하

대폐차 신고업무 점검결과

사례 1 불법 차종 변경 대폐차

- (점검결과)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차(청소용 차량 등)은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차(카고, 윈바디 등)로 차종 변경이 불가능하나, 이를 위반한 사례 적발
- (조치사항) 지자체에 불법 차종 변경 차량에 대해 감차처분 요청

사례 2 번호판 장사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인 차량 등록 및 말소

- (원칙) 영업용 화물차는 최대 6개월 내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, 위반시 감차처분 대상
- (불법행위) 일부 운송사는 허위 계약서 등을 활용해 당일 등록 후 당일 말소하는 방식을 반복하여, 감차처분을 회피하고 이를 번호판 장사에 활용함
- (조치사항) 지자체에 불법적인 차량 등록 및 말소 사례에 대해 직권취소 요청